

의안번호	2208547
의 퇴 인	이수진의원
회 답 일	2025.04.16.
추계번호	25C1244

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32조 (교육전담간호사)	○ 국가는 교육전담간호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함. 이 경우 지원 대상·범위·금액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(제3항) - 현행 재량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개정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32조 (교육전담간호사)	○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교육전담간호사(안 제32조)

- 개정안은 교육전담간호사 운영에 대한 규정을 현행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, 법적 의무화에 따라 사업을 확대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규정 의무화에 따른 사업 확대 여부와 범위 등이 정해져야 하나, 개정안은 이를 하위법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현시점에 이를 합리적으로 가정하기 어려움
 - 현재 보건복지부는 「의료법」 제41조의2¹⁾에 ‘필수의료 간호사 양성지원’ 사업을 통

해²⁾ 필수의료 병동*과 필수의료 수행 의료기관의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(255명을 대상으로 월 320만원씩 1년간 지원)와 표준 교육프로그램 개발비 지원을 위해 2025년 기준 101억 4,200만원을 이미 배정함

* 중환자실, 수술실, 응급실, 집중치료실(뇌졸중, 고위험임산부)
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임슬기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임슬기	02-6788-4740	sg.lim@assembly.go.kr

-
- 1) 「의료법」 제41조의2 ①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신규 채용되거나 보임된 간호사, 간호대학생(이하 “신규간호사등”이라 한다)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, 기술 및 역량 등을 전수하고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전담간호사 양성교육을 이수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교육전담간호사를 두어야 한다.
-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전담간호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.
-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교육전담간호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전담간호사의 배치 대상과 기준은 의료기관의 종류 및 규모, 신규간호사등의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- 2) 「간호법」 에도 동일 조항이 있으나, 이는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 예정임